

#### 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(개인회생채권자표로 건물)

## 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 청 구 금 액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## 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개회 ○○○호 개인회생 사건의 집 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정본

##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## 신 청 취 지



- 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.
- 2.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## 신 청 이 유

- 1.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20oo. oo. oo.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oo. oo. oo.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가, 같은 해 oo. oo.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확정었습니다.
- 2. 그러나 채무자는 위 채무를 지급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위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 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#### 첨 부 서 류

1.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정본	1통
1. 개인회생 절차 폐지 확정증명원	1통
1. 주민등록초본(채무자)	1통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	각 1통
1.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·시군구청통보·	<del>9</del> ),
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보관용)	각 1통
1. 법원보관금영수증	1통
1. 이해관계인목록	2통
1. 부동산목록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

# O O 지방법원 귀중 [별 지]

#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○ 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 324㎡. 끝.



# [별 지]

# 이해관계인의 표시

번 호	구 분	성 명	주 소
채권자 겸	00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	
1	가압류권자	01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		02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2	채무자 겸 소유자	$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$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3	근저당권자	◈◈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4	근저당권자	주식회사 <b>■</b> ■ 상호저축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 민사집행법 제80조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: 1통 제출)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 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 (이해관계인) 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	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)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)납부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함.			
기 타	야함.  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. 10. 15.자 83마393 결정). 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. 6. 3.자 68마378 결정).  ·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